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 승 일



2024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훈령 제2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5조의 사항을,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는 회의규칙 제59조의 사항을 적용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배부회의록) 배부회의록은 제본에 의한 책자회의록 또는 CD-ROM 등으로 제작·배부하고 영구 보존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전자회의록)”을 “(전자회의록 공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신속하게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전자임시회의록”이라 함은		<u>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회의록)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5조의 사항을, 상임위원회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3조(회의록)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5조의 사항을, 상임위원회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9조의 사항을 적용한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배부회의록) 배부회의록은 제본에 의한 책자회의록 또는 CD-ROM으로 제작·배부하고 영구 보존한다.		제6조의2(배부회의록) 배부회의록은 제본에 의한 책자회의록 또는 CD-ROM 등으로 제작·배부하고 영구 보존한다.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전자회의록) ①전자회의록은 회의록 원고 완료 즉시 이를 의회 내부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전자회의록 공표 등)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신속하게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개정 이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전자임시회의록 게재 근거규정 신설 등(안 제6조의3)